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6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김태선 · 정준호 · 노종면
안도걸 · 장철민 · 박홍배
박 정 · 김한규 · 정을호
추미애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육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등은 대체재가 부족한 필수재로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 효과 없이 제품 가격 상승만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보다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나 수거 체계 개선 등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폐기물부담금) ① (생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1·2. (생략)	1·2. (생략)
<신설>	3. <u>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u>
<u>3.</u> (생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